



공 고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583 호

다동구역제 1지구재개발사업  
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1. 건설부 고시 제 357 호 ( 73.9.6 ) 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동고시 제 46 호 ( 76.4.7 )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11 호 ( 86.1.9 ) 로 사업계획 결정 및 사업계획 변경결정된 다동구역 제 1 지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 562 호 ( 86.8.6 ) 로 재개발사업 제 3 개발자 지정을 받은 (주)우성건설 대표이사 최승진으로 부터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재개발법 제 33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공고일로부터 30 일간 일반인에게 보인다.
2. 사업시행구역내의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,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개별 통지할

것이나,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공고로 통지에 갈음한다.

1986.10.25

서울특별시장

가. 공람개요

- (1)재개발사업의 명칭 : 다동구역 제 1 지구 재개발사업
- (2)시행구역 : 중구 다동24-1와 21필지
- (3)시행면적 : 4,202.1㎡
- (4)시행자 : (주)우성건설 대표이사 최승진
- (5)주원사무소 소재지 : 강남구 서초동 1586-7
- (6)시행기간 : 86.12-88.8.31
- (7)전측개요
  - 대지면적 : 2,846.7㎡
  - 건축율 : 40-43%
  - 용적율 : 665-670%
  - 층 수 : 지상 17층, 지하 5층
  - 주용도 : 근린생활시설
- (8)공람기간 : 86.10.25-86.11.24
- (9)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589 호

석유판매업 (용제판매소)  
허가 취소 처분공고

석유사업법 제 13조 3 항의 규정에 의거 석유판매업 (용제판매소) 허가를 취소 처분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1986.10.25

서울특별시장

허가번호	상 호	소 재 처	대표자	허가주소 직분업사	취소처분사유
85-8	용립화학	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 656-1661	김준식	86.10.22	유사취발유 보관관매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590 호

도시계획안(학교)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665 호(86.9.11)로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746 호(86.10.14)로 지적 승인된 도시계획시설(학교)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 및 동법 시행령 제 27 조의 2 규정에 의거 공람 공고한다.
2.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시는 공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하기 바란다.

1986.10.25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자 : 구로구 오류동 199-1

나. 사업의 종류 및 경칭 : 도시계획

사업(학교) 서울고등기술학교

다. 사업시행규모

구 분	당 초	변 경
부지면적	3,808㎡	5,473㎡
건축면적	357.60㎡	1,144.10㎡
건축연면적	2,390.35㎡	3,986.35㎡

라.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: 구로구 오류동 199-1 학교법인

정문학원 이사장 윤순성

마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: 생략

바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, 건물의 조서, 지번,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: 생략

사. 공람장소 : 구로구청 도시정비과

아. 공람기간 : 86.10.25-86.11.8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592 호

판인 폐기 및 교부 공고









서울특별시립 부너복지과장의 직인



동북지방관 제인, 서울특별시립 근로청소년회관장의 직인 및 동회관 제인을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하고 서울특별시립 구로부너복지관장의 직인 및 동복지관 제인, 서울특별시립 남부근로청소년회관장의 직인 및 동회관 제인을 동규칙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함을 동규칙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다.

1986.10.25  
서울특별시 장

1. 사용 및 폐기일자: 86.10.25
2. 폐기관인
  - 가. 서울특별시 부너복지관장인
  - 나. 서울특별시 부너복지관 제인
  - 다.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회관장인
  - 라.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회관 제인
3. 사용관인
  - 가. 서울특별시 구로부너복지관장인
  - 나. 서울특별시 구로부너복지관 제인
  - 다. 서울특별시 남부근로청소년회관장인
  - 라. 서울특별시 남부근로청소년회관 제인

4. 관인의 인영 (폐기 및 재교부직인)

인 영	폐 기	재 교 부 직 인
	 	 
공인명	부너복지관장인및제인	구로부너복지관장인및제인
인 영	폐 기	재 교 부 직 인
	 	 
공인명	근로청소년회관장인및제인	남부근로청소년회관장인및제인

<p>◎서울특별시공고제 593 호</p> <p>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공고</p> <p>서울특별시 조례제 2104('86.9.22)호 에 의거 기구명칭 변경에 따른 근로 청소년회관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용 서</p>	<p>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 7 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조 등록하고 동규칙 제 11조에 의거 이 의 공고한다.</p> <p>1986.10.25 서울특별시 공 1. 직인등록조서 : 별첨</p>
<p><u>직 인 폐 기 신 고 서</u></p>	
<p>회계명 : 일반회계</p> <p>관서명 :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회관</p> <p>직 명 :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회관 분임경리관</p> <p>사용기간 : 1982년 5월 25일부터 1986년 10월 일까지</p>	<p>폐기당시인영</p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 </div>
<p><u>직 인 폐 기 신 고 서</u></p>	
<p>회계명 : 일반회계</p> <p>관서명 :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회관</p> <p>직 명 :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회관 분임지출원</p> <p>사용기간 : 1982년 5월 25일부터 1986년 10월 일까지</p>	<p>폐기당시인영</p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 </div>

직 인 폐 기 신 고 서

회계명 : 일반회계

관서명 :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회관

직명 :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회관세입세출의원금출납원

사용기간 : 1982년 5월 25일부터

1986년 10월 일까지

폐기 당시 인영



직 인 폐 기 신 고 서

회계명 : 일반회계

관서명 :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회관

직명 :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회관 물품관리관

사용기간 : 1982년 5월 25일부터

1986년 10월 일까지

폐기 당시 인영



직 인 폐 기 신 고 서

회계명 : 일반회계

관서명 :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회관

직명 :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회관 물품출납원

사용기간 : 1982년 5월 25일부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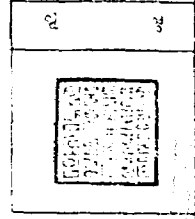
1986년 10월 일까지

폐기 당시 인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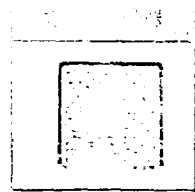
직 인 등 록 조 서

회 계 명 : 일반회계  
 관 서 명 : 서울특별시 남부군로청소년회관  
 직 명 : 서울특별시 남부군로청소년회관문임경리관  
 사용개시일 : 1986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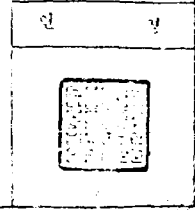
직 인 등 록 조 서

회 계 명 : 일반회계  
 관 서 명 : 서울특별시 남부군로청소년회관  
 직 명 : 서울특별시 남부군로청소년회관 문임지출원  
 사용개시일 : 1986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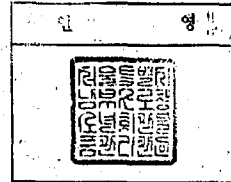
직 인 등 록 조 서

회 계 명 : 일반회계  
 관 서 명 : 서울특별시 남부군로청소년회관  
 직 명 : 서울특별시 남부군로청소년회관새입세출의현금출납원  
 사용개시일 : 1986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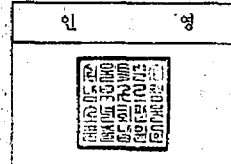
직 인 등 록 조 서

회 계 명 : 일반회계  
 관 서 명 : 서울특별시남부군로청소년회관  
 직 명 : 서울특별시남부군로청소년회관물품관리관  
 사용개시일 : 1986.



직 인 등 록 조 서

회 계 명 : 일반회계  
 관 서 명 : 서울특별시남부군로청소년회관  
 직 명 : 서울특별시남부군로청소년회관물품출납실  
 사용개시일 : 1986.



사 령

◎ 1986년 10월 21일자

령제 442호

성 명	발령부서	현부서	직 급
이기연	마포부녀복지관	시 민 과	지방행정주사
권영애	"	부녀청소년과	"
윤경혜	"	복지소년과	지방행정주사보
김재룡	"	동대군구	"
김호생	"	관악구	지방행정서기
허봉기	"	송로구	지방행정서기보
오홍근	"	군로청소년회관	지방수관



령제 443 호			
성 명	발령부서	현 부서	직 급
박상진	동부군로청소년회관 근무	동대문구	지방행정주사
신종식	지방행정주사에 입합, 동부군로청소년회관 근무	공무원교육원	행정주사
김인기	동부군로청소년회관 근무	용인구	지방행정주사보
이재권	·	동대문구	·
강준석	·	강동구	지방행정서기
오종혁	·	성동구	지방행정서기보
안용규	·	도봉구	·
임기원	· 파견	성북구	·
◎ 1986년 10월 20일자      령제 444 호			
성 명	발령사항	현 부서	직 급
백영현	기획관리실 파견근무 ( '86.11. 1-'86.12.31 )	종합건설본부	지방토목기사
성법재	· ( '86.10.20-'87. 4.30 )	종합운동장관리 사업소	지방건축기사
임형록	· ( '86.10.20-'87. 4.30 )	종합건설본부	지방토목기사보
이종열	기획관리실 파견해제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파견근무 ( · )	건축지도과	지방건축기사
◎ 1986년 10월 22일자      령제 445 호			
성 명	발령부서	현 부서	직 급
반중남	내무국	새문나회관장	지방부이사관
◎ 1986년 10월 20일자      령제 446 호			
성 명	발령사항	현 부서	직 급
서동기	직을 명하	내무국	지방서기전

10-10 제 1322 호 시

본 1986.10.25

◎ 1986 년 10 월 24 일 자				형제 447 호
성 명	발 령 부 서	현 부 서	직 위	직 급
김 승 겸 이 광 우	공 보 관 세종문화회관장	강 동 구 공 보 관	부 청 장	지방부이사관
				형제 448 호
성 명	발 령 사 항	현 부 서	직 위	직 급
박 노 준	지방공무원법 제 22 조 제 1 항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 을 면함.	서 대 문 구		지방토목기원보 시보
서울특별시				
◎ 서울특별시예규 제 484 호 (시보 제 1321 호, '86.10.20) 의 기관기호 및 수신 처번호양식중 기관번호를 "기관기호" 로 정정함.				